

제 호

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

1. 법인·단체명:

2. 대 표 자:

3. 소 재 지:

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